

13.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179호 1999. 5. 26.

개 정 이 유

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관리비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리권을 인정하고,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임대주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인정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.
- 나. 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요구, 관리비의 예산 및 결산 심의,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 요구 등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리권을 인정
- 다.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라. 임대사업자의 등록,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